

건축공사의 감리와 그 책임한계

AIA의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중심으로

■
Feature
Responsibilities in
Building Construction
by Lee, Jea-Ok

V. 지방서등 계약서류의 작성과 이에따른 책임한계

미국에서는 건축사가 작성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있는 시설공사의 계약서류의 범위를 입찰초대장, 입찰설명서, 입찰서, 보증서, 계약서, 시설공사계약일반 및 보완조건, 지방서 그리고 도면과 추록까지로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계약서류들 중에서도 도면만을 제외한 여타의 계약서류를 통칭해서 Project Manual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류는 크게 Project Manual과 도면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1. 입찰초대장의 작성

입찰초대장의 작성목적은 우선 당해 공사의 범위를 입찰자들에게 신속하면서도 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이 입찰초대장을 보고 입찰자들은 그 공사가 자기회사의 능력이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수행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수행가능한 공사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된다. 입찰초대장에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개요와 연면적 및 주된설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입찰서를 받는 날짜와 시간 및 장소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도면과 지방서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계약서류의 구입장소와 가격을 명시하여 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든 계약서류 즉 도면과 지방서는 물론 계약일반조건등 건축사가 미리 작성해 놓은 일체의 계약서류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짜에 구입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입찰자가 이들의 모든 서류를 자기의 사무실에 구입 비치하여 전적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개찰후에 파손없이 돌려주는 계약서류에 대해서는 구입시 지불했던 금액을 반환까지 해주고 있다.

2. 입찰설명서의 작성

입찰설명서는 입찰서의 작성요령을 주로 명기하기 위한 서류이다. 따라서 입찰설명서는, 입찰금액을 결정하기 이전에 도면과 지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답사하여 입찰한 금액으로 모든 계약을 완전히

수행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명기하는 서류이다.

AIA의 입찰설명서는 보통 입찰한 사람이 자기의 입찰서를 철회하기를 원할때는 개찰일 전까지는 서면요청에 의해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단 개찰일이 지난 다음에는 60일 이내에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자는 입찰을 함에 있어서 건축사가 작성한 계약서류의 일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있거나 계약서류 상호간에 모순점이 발견된다든지 또는 누락사항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건축사에게 이에대한 서면통보를 할 책임이 있는데 이와같은 통보는 적어도 개찰일의 7일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가 이에대한 통보를 받게되면 즉시 검토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추록(Addenda)을 만들어 계약서류를 구입해간 모든 입찰자에게 건축사는 이를 통보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된다.

3. 입찰서의 작성

미국의 건설공사 지방위원회에서 발간한 Construction Specification Handbook에는 건축사가 지방서등의 계약서류를 작성할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충고하고 있다. 첫째로, 법적인 용어를 구사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건축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를 구사할 경우에는 소송이 벌어졌을 때에 법률가에 의해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낱새가 나는 용어는 절대로 사용치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 위원회는 권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서 등을 작성 할 때는 법관이 지금 어깨넘어로 당신이 작성하는 지방서를 읽고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특히 건물의 시공책임이나 하자책임등에 대해 재판이 비밀비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로, 가급적 글을 간단히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아무래도 말이 많다보면 책잡히기 쉬운 이유 때문도 있겠으나 시방서 등이 장황해질 경우 그에 따른 실수가 비례되어 발생 할 것을 염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입찰서의 작성은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안입찰에 의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으며 턴키(Turn Key Base)에 의하여 입찰하는 것은 특별한 Know-How나 경험의 축적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거의 한정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왕왕 턴키에 의해서 발주하는 것이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기술의 개발이나 경제적인 공법의 개발에 의해서 저렴한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대안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지 플랜트나 원자력 발전소등과 같이 특정한 Know-How나 기술의 축적이 전제되는 공사에 한해서 턴키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서는 보통 개찰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정도 검토 되는데 이 검토 기간 내에는 입찰서의 철회는 불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검토기간이 이보다도 훨씬 긴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2개월 정도를 검토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많은 입찰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만큼의 기간은 필요한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안입찰이나 턴키등에 의한 입찰시에는 건축사나 발주자가 제출된 입찰서를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와 같이 대안입찰에 의해서 최저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입찰자로 부터 여러개의 대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서의 검토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개찰 그 자체가 바로 낙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찰은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의 시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와는 상이한 점이 되고 있다.

4.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Agreement)는 보통 AIA Document A 101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양식을 거의 모든 건축공사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의 제 1조에는 계약서류의 범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 계약서류에는 건축사가 작성해서 배포한 추록(Addenda)에 의해 변경된 내용까지도 분명히 계약서류에 속함을 명시하여 놓고 있다.

특히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고 있는 기성고의 지불방법을 보면 우선 기성고는 매달의 같은날에 당해공사에 소요된 인건비와 자재비및 기계경비에 상응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하되 그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은 계약총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매달마다 정해진 날짜가 오면 총체 계약금액중 계약자 쌍방간에 약정한 일정비율의 기성금액을 지불할 준비를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시공자는 정해진 공정표에 의해서 약정한 공정을 이행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게되는 것이며 이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자는 또한 매달의 정해진 날에 계약쌍방간에 약정한 장소나 공사현장에 보관하고 있는 공사용의 자재나 장비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의해 기성고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불할 기성고의 계약 금액에 대한 비율은 계약당시에 쌍방간의 약정에 의해서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월 지불하여야 할 기성고의 합계는 전달까지 지불한 기성고의 총계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공상태에

다달으면 발주자는 그 때에는 이제까지 지불한 기성고와 그 달에 지불 할 기성고의 합계가 거의 계약금액의 총액에 다달을 수 있는 만큼의 기성고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 마지막달의 기성고의 금액은, 건축사가 아직 미해결된 클레임의 해결을 위해서 또는 불완전한 공사의 제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불을 유보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적은 범위가 되도록 하고 있다.

즉 이와같이 마지막달의 기성고를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이 되게 함으로써 공사가 완공이 되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사의 대금도 거의 지불이 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보증서의 작성

보증서는 입찰보증서와 이행보증서 그리고 인건비 및 자재비 지불보증서로 구분이 되어 작성되고 있는데 AIA에서는 보통 입찰보증금은 전체 공사비의 10% 정도를 책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행보증금과 인건비 및 자재비 지불보증금으로서는 각각 100%씩을 책정토록 하고 있다.

6. 계약일반 조건의 작성

AIA의 시설공사 계약일반 조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상의 시설공사의 집행에 따르는 제 규정과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공사의 집행에 따르는 모든 분쟁이나 소송등은 바로 이 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판정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하나의 권위있고 규범적인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있으면 건축사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자기가 작성하는 계약서류에 그대로 전문을 인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상법이나 경제법등에 전문가가 아닌 건축사가 계약일반 조건을 잘못 편집하거나 작성하여 법원에서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과거의 경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A의 시설공사 계약일반 조건은 미국은 물론 유럽 및 중동과 중남미등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장 전통있고 규범적인 계약조건 중의 하나이다.

7. 계약보완 조건의 작성

계약보완 조건은, 본래 계약일반조건이 규범적인 것의 하나를 수정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 건축사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계약 일반조건과 상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이다. 계약보완 조건역시 계약일반조건과 마찬가지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의 작성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보통계약 일반조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정도로 밖에 수정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조건의 잘못보완에 따라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발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8. 시방서의 작성

시방서는 도면에 명기하기에 어려운 공법이나 재료의 품질 또는 규격과 품질의 관리방법등을 명시하여 줌으로써 도면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계약 서류이다. 따라서 시방서의 작성은 도면의 작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종의 하나이다. 실제로 미국에 있어서는 시방서의 작성방법이 건축공학과의 교과목의 하나로 들어있어 이에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지않고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시방서의 작성은 도면작성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여 온 관행으로 인해 우리의 기술자들이 해외공사에서 많은 클레임에 시달려 왔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많은공사에 있어서 시방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부분 몇십페이지 짜리의 특기 시방서만을 작성해 놓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의 해당공종에 대한 시방서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막연히 원용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표준시방서의 관련부분을 인용할것"이라는 규정은 너무 넓고 일반적인 것이어서 실제로 이에 따라서 적정히 공사가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기술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사의 적정성여부가 가름되어온 공사도 왕왕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사가 대형화되고 또한 전문화됨에 따라 모든 공사에 대하여 우리도 표준시방서를 모태로 하여 자기가 설계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작성하는 시방서 한권만을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Project Specification을 작성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건축사의 설계의 의지가 시방서에서 더욱 보완되어 질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스스로 의도했던 대로 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9. 추록의 작성

추록(Addenda)은 건축사가 작성하여 배포한 각종 계약서류간에 서로 상치되는 경우나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 입찰자의 문의에 의해서 또는 건축사가 자발적으로 이 같은 오류로 인해 입찰시에나 또는 공사중에 입찰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입찰할 날짜의 7일전까지 모든 입찰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주는 계약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건축사에 의해서 통보된 추록은 최종적인 통보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입찰자의 과실로 인해서 추록을 통보 받지 못한채로 입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입찰자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일전에 혹시 자기가 받지못한 추록이 건축사에 의해서 발부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하도록 AIA에서는 조언하고 있다.

VI 결어

건축공사는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이동성이 높고 또한 원자재를 현장에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면서도 각각의 건물의 형태나 용도마다에 이질성이 높은 공사이기때문에 정지된 공간내에서 기계적인 순서에 따라 특정제품을 계속 반복생산하는 제조업에 비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또는 감리자간의 책임의 한계가 훨씬 모호할 경우가 많고 계약의 적정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의 견해차가 현저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제까지 건축공사의 감리와 그 책임한계에 대해서 미국AIA의 사례를 예로 들어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론에 지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되며 보다 확실한 책임의 한계는 각각의 공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현장성을 일일히 감안하고 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까지도 때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아직 발주자와 건축사 그리고 시공자간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세부적

지침으로 확립되어있지 않으면서도 건축공사 관계자간의 책임한계에 대한 소송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에서 이제까지 대부분 관행에 의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온 결과,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자연히 성립하여 힘이 약한 을이 더 많은 책임을 불공평하게 지운 악순환이 계속되어온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계약자체는 뒷전으로 밀린채 많은 시공자와 하도급자 그리고 설계자들이 윤리라는 미명아래 발주자의 책임을 도맡아야하는 경우도 많았고 부당한 재시공이나 재설계의 악순환을 겪어왔으며 시공자나 설계자의 기술개발 의욕은 발주자의 경제성 추구에 꺾여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다. 최근들어 건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 되면서 우리는 선진국의 각종 건설기술을 수용하고 변용하면서 우리의 건축기술은 놀랄만한 진전을 이루어 왔지만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갑의 횡포와 을의 굴종 관계개선에 는 그다지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계자의 진정한 창작의지가 구현되고 나아가 발주자에게 쾌적한 건축환경을 제공하면서 시공자에게는 응분의 댓가를 받게하려면 공사현장에서 우선 계약이 관행보다 우선하는 풍토를 하루빨리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와 설계자 및 시공자등 관계자 모두의 의식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아래와 같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현행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8 1986.7.14) 31조(분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현재 사문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조속히 정비하고 중재판단을 위한 세부기준과 운영체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관계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약정된 바에 의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공사의 진행과 완성을 위해서는 계약서류 자체가 막연히 다른 자료를 원용하거나 전문을 통채로 인용하는 것은 지양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각종 표준시방서를 Guide Spec체계로 개편하여 모든 공사의 설계자가 계약문서가 되는 당해 공사의 시방서를 다른 자료의 전문원용없이 당해 공사만에 필요한 Project Spec을 작성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제정 Guide Spec은 안내의 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시공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시설공사 계약일반 조건상의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에 대한 지불기간을 단축하여 현재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30일마다 총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로, 설계자의 설계의지의 파악과 투입될 공사비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상의 입찰방법 개선과 Addenda(추록) 발부제도의 도입 및 시설공사 계약서류의 구입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축공사의 현장설명을 적어도 개찰일의 15일 이전에 행하도록 하고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30일 이전에 행하도록하여 시공자가 현장의

여건이나 관련자료를 충분히 수집 분석하여 입찰가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찰서의 열람후에 입찰자들로부터 해명을 요구 받게되는 계약서류상의 모든 오기나 모순 및 불확실점 등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적어도 입찰일의 7일 이전에 모든 입찰자가 공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문서의 하나인 Addenda(추록)의 발부제도를 도입하여야 관계자간의 책임관계에 대한 많은 분쟁의 소재를 없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공자가 손쉽게 입찰에 붙인 공사의 설계서와 시방서등의 가능한 모든 계약문서를 충분히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서와 시방서등을 현장설명일이나 또는 그 이전이라도 편리한 장소에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입찰유서의 관련조항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자와 현장내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 지불에 대한 민원방지를 위하여 현행의 계약사무처리 규칙상의 보증금 납부 항목에 노무비 및 자재비 지불보증금의 납부제도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현행의 준공검사가 주로 도면 위주의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도면과 시방서가 동등하게 증시되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건물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묵살당하지 않고 클레임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건설기술의 개발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행의 VE 제도 등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조속히 수립시행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대형공사 계약에 대한 예산회계법 시행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해 대형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안입찰을 모든 건축공사에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시설공사에 관한 기술개발 촉진 및 장려시책이 실용화되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토록 공기단축이나 공사비의 절감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규정만의 신설에 그칠것이 아니라 이의 세부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조속히 제정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끝)

건설부공고 제10호

건축사자격(면허)시험시행공고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시행계획(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7년 1월 23일

건설부장관

| 구분 | 건축사자격(면허)시험 | 건축사자격(면허)특별전형시험 |
|-----------------|--|---|
| 1. 시험일시 | ○ 1차시험: 87년 5월 24일(일) 10시~12시30분 ○ 2차시험: 87년 6월 중순 시·도계시판에 공고함 | ○ 필기시험: 87년 5월 24일(일) 10시~11시40분 ○ 실기시험: 87년 6월 중순 시·도계시판에 공고함 |
| 2. 시험장소 | ○ 1차시험: 87년 4월 30일 시·도계시판에 공고함 ○ 2차시험: 87년 6월 중순 시·도계시판에 공고함 | ○ 필기시험: 좌 동 ○ 실기시험: 좌 동 |
| 3. 응시자격 | ○ 건축사법 제 7조 및 동법 제 14조에 해당하는자 | ○ 건축사법 제 16조(건축직공무원) 또는 동법 부칙 제 2항(2) 건축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동법 제 14조에 해당하는자 |
|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1차시험(객관식선택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 2차시험: 건축계획(주관식, 논술형) 및 객관식선택형(응) 건축설계(실기) | ○ 필기시험(객관식 선택형): 건축구조, 건축계획 ○ 실기시험: 건축설계(실기) |
| 5. 시험과목 및 일부 면제 | ○ 다음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의 과목면제신청란에 해당 시험과목을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건축에 관한 자격(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기술사)을 취득한 자 (2) 외국에서 건축사의 면허를 한 자격이 있는 자 | ○ 다음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법 제 14조에 의 |

| | |
|---------------------|--|
| 6. 응시원서 및 수험료 | ○ 원서교부기간: 1987년 4월 1일~4월 10일(10일간) ○ 원서접수 및 수험료 교부기간: 1987년 4월 6일~4월 10일(5일간) ○ 원서교부·접수 및 수험료부처: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및 광도청 민원실 |
| 7.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봉(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인원판의 반명함판: 3cm×4cm) ○ 시험과목 일부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응시수수료: 2,000원(정부수입인지) |
| 8. 합격자발표 | ○ 1차시험 및 필기시험합격자: 1987년 6월 중순 시·도계시판에 공고함(건축설계실기시험 과제명 포함) ○ 최종합격자: 1987년 10월 중 시·도계시판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면허증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 |
| 9. 2차시험 및 실기시험의제출서류 | ○ 1차시험 및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건설부 건축과에 제출하여야 함. ① 주민등록표: 1봉(남성인 경우에는 병역사실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②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봉 ③ 경력증명서류: 실무경력증명서(단,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은 대한건축사협회 각시·도지부장의 확인을 받은 것) 또는 대학원에서 건축관련분야에 관한 학위과정수료증명서. ④ 친원증명서: 1봉 ⑤ 사진(3cm×4cm): 2매(수험번호 및 성명을 사진이면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⑥ 반신부부: 1매(최종합격자 통보용이므로 수취인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 10. 응시자 지참물 | ○ 응시자는 시험개시 30분전에 수험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객관식선택형: 컴퓨터용 수성펜(인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주관식논술형: 흑색 또는 청색의 볼펜이나 만년필을 사용하되 동일한 색의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실기(건축설계): 연필, T형자, 3각자, 스케일자, 전자계산기 이외의 기계식계도틀들은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
| 11. 응시원서 작성 주의 사항 | * 건축사자격시험(일반)과 특별전형시험 구분표시는 본인인별점없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정답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 추후 제출할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503-7365~6, 500-2874~5) |